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7. 22.(수) 10:0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주)에스비에스엠앤씨) 재허가에 관한 건 (2020-42-211)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주)에스비에스엠앤씨)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주)에스비에스엠앤씨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로 재허가한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붙임 1>과 같이 재허가 조건을 부가한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 2020년 8월 22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재허가를 신청한 SBS M&C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성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경제·경영, 회계, 방송, 광고 등 5개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사위원 명단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법률요건 심사, 계량 및 비계량 평가 등이며, 2020년 6월 24일부터 3일간 재허가 심사,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4쪽 <5>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SBS M&C는 100점 만점 기준 총점이 78.405점, 각 심사항목별로 60점 이상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점수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만, 법률요건 심사결과 주주인 (주)에스비에스와 (주)아이에이치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소유제한 규정 위반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가> 종합의견입니다. 재허가 심사 결과, SBS M&C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매출의 안정적인 지원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SBS M&C 주주사의 소유제한 위반 및 최대액출자자 SBS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 등의 개선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향후 5년간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및 공익성 실현 등의 계획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나> 심사의견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소유제한 위반 관련 SBS M&C는 자사 주주의 광고 대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주식소유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타 주식들에 대해서도 주식소유 위반의 가능성과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음 SBS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해소사항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소유제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주주와의 협의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네트워크 광고합의서와 전파료 관련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매출 배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시장가치 등을 반영한 새로운 방송광고 매출 배분 기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OBS 관련해서는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결합판매, 비결합판매를 포함한 전체 방송광고 판매 지원비율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방송광고 산업발전 관련해서는 방송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규모는 이전 수준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가> 재허가 여부입니다. 법령 및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허가 기준을 충족한 SBS M&C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로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즉 2020년 8월 22일부터 2025년 8월 21일로 한다입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나>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허가 심사 시 중점적으로 지적된 다음의 사항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부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허가 조건으로 ① 소유제한 위반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② SBS미디어홀딩스 최대역출자자 변경 관련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 해소, ③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판매 지원, ④ 방송광고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규모 유지 및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 등이며, 권고사항으로는 ①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광고 매출배분 기준 마련 시 지역별 시장가치 외 다른 사항도 고려하고, ②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사업자 간 방송광고 연구·조사 등 수행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1>의 재허가 조건(안)을 참고해 주시되, 조건 부가 방식에 대해 논의가 많았던 사항을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붙임 1>을 봐주십시오. 먼저 지역민방 관련입니다. 재허가 조건 <3>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내용 및 (주)에스비에스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에스비에스엠앤씨 간 체결한 네트워크 광고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제출할 것, 향후 SBS 네트워크 광고합의를 갱신하는 때에는 종전의 합의서보다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OBS 관련입니다. 재허가 조건 <4>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결합판매, 비결합판매를 포함한 전체 광고 판매 지원비율은 2021년부터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수준(매출 평균 비율)이 되도록 할 것, 이와 관련하여 이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8월 중 재허가증을 교부하고, 내년도 3월 말 재허가 조건 관련 이행 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SBS와 네트워크 지역민방 등에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고 하는 SBS M&C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안건입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BS M&C는 모든 심사항목에서 배점의 60% 이상 얻었고, 또 전체 총점에서도 재허가 기준점수인 70점을 상회해서 재허가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SBS 미디어홀딩스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공정거래법과의 충돌과 일부 주주의 소유 제한 위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과 중소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 및 방송광고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규모 유지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무처에서는 5년을 재허가하되, 재허가 6가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습니다. 특히 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올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했는데,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무처안은 합법의 범위 안에서 SBS M&C의 영업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에서 공정경쟁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BS M&C의 재허가 조건을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시고 권고사항 역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SBS미크 심사 과정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광고대행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분 및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규 위반 해소 방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현재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IHQ가 지분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쪽에서 어떻게...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SBS와 IHQ가 소유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양쪽에서 서로 의견을 내는 것으로...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석 달 안에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재허가 조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재허가 심사위원들이 소유제한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SBS 지배구조 개편,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와 전파료 배분 문제, OBS의 방송광고판매 지원 비율 문제, 방송광고 산업 진흥 방안 등 핵심적인 쟁점들을 잘 살펴봤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반영해서 사무처가 SBS M&C에 대한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해 주면서 부가한 6가지 조건과 2가지 권고사항 역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허가 조건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제9차 회의에서 SBS M&C 재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할 때 제가 지상파방송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방송 및 광고산업 단체 지원사업계획 중 불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미디어렐사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종편 미디어렐은 공익적 차원에서 부담을 몇 퍼센트나 지고 있습니까?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3% 정도로….

○ 허 육 상임위원

- 종편 미디어렐사가 3%씩 부담하고 있다고요?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확인해 보겠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KOBACO는 재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또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예.

○ 허 육 상임위원

- 제가 방송광고 산업 진흥을 도외시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 방송광고 진흥 예산을 매출이익의 3%로 정하고도 실제로는 일정 비율을 자기 회사의 마케팅 예산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렐사의 부담은 다소 줄여주되, 방송광고 업계 지원으로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방송

광고시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 말에 SBS M&C가 방송광고대행수수료를 2% 인상해서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연간 지원규모를 매출 총이익의 3%라는 부분을 연 2% 정도로 낮추고 실질적으로 방송광고 업계 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재허가 조건 <4>번 항에 보면 전체 광고 판매 지원비율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즉 민방과 동등한 수준 그리고 평균 매출 비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평균 매출 비율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광고합의서에 따르면 평균 매출비율 97%가 미달할 때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의미입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97%를 의미한다?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예.

○ 허 욱 상임위원

- 전과료 배분 조정 문제도 아직 합의는 안 됐지요?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래서 <권고사항 1>의 지역별 시장가치 등을 반영한 합리적 방송광고 매출 배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 이 사안이 바로 전과료 배분 문제를 반영하라는 뜻이지요?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끝으로 심사위원들이 미디어렙 업무의 영역 확대, 즉 크로스 미디어를 제기했었고 비대칭 광고규제 개선, 계량 평가 때 예를 들면 일정 부분의 사전 조정, 가중치 배분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심사기준에 관련된 일부 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4가지 정책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개선계획은 현재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향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저는 의결주문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다만 한 가지 재허가 조건 <5>번 항목에서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연간 지원규모는 3% 대신 2%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예. 당초 과년도에는 방송광고지원 계획을 3%로 계속 이행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 시 SBS M&C에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 광고매출 하락 등을 사유로 향후에는 1%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재허가 신청서에 반영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광고 관련된 세미나, 연구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심사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지원했었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재허가 조건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3%라는 것은 매출 총이익의 3%라는 것인데 과년도에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었는지...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19년도 기준으로 3.4억원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매출이익이 감소하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은 또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까?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예.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SBS M&C 관련 심사하시느라 심사위원님들,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허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재허가 조건은 크게 6가지입니다. 분리해 본다면 법률 위반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지역민방과 OBS에 대한 방송 광고 매출의 안정적인 지원 문제, 그리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공적 역할 수행 문제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 문제 해소는 당연히 의무조항이고 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머지 지역민방과 OBS에 대한 지원 문제와 공적 역할 수행 문제는 SBS M&C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 총이익의 3%를 2%로 내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존경하는 허 욱 위원님의

긴급제안이 있었습니다. 2%로 내리면 얼마나 된다는 것이지요?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3%가 과년도가 3.4억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2%면 한 2.2억~2.3억 정도?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예.

○ 안형환 상임위원

- SBS M&C의 작년 총 이익이 얼마지요?

○ 이동석 방송광고정책과장직무대리

- 약 8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역할 수행 부분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SBS M&C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상파 광고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상생의 지혜를 모을 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심사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이런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고 또 지혜를 모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우선 소유 제한 위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반을 하고 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하도록, 위반을 해소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것 이전에 사업자가 충분히 숙지해서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에게 기본을 지키도록 방통위가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허가 조건 <4>번은 OBS와 관련한 사항인데 이것은 기존 OBS가 광고판매 지원받던 비율이 실질적으로는 상향된 것입니다. 그러면 OBS가 이러한 광고매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 제작에 더 투입해서 방송의 품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OBS의 조건부 재허가 조건 가운데도 들어있지만 복합적으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무처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 욱 위원님, 또 안형환 위원님 각각 공적 지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원안대로 3%로 유지하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재허가 조건이 크게 봐서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문제, 또는 해소방안을 내고 계획을 세우는 문제 그리고 중소방송사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SBS M&C의 공적 역할 수행 관련 문제,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법사항을 해소하거나 해소할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니까 조건 부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중소방송사들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역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건 <5>번 항목이 유일하게 SBS M&C가 온전하게 부담하는 공적 책임과 관련한 재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윗부분은 광고매출의 배분 문제와 관련했기 때문에 SBS M&C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5>번 항목이 유일하게 SBS M&C가 부담하는 공적책임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저도 여러 가지 고려한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 대부분 원안 동의 의견이니까 이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2019년에 3억 4,000만원이지만 2020년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3억 1,400만원으로 3%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적 역할을 수행 측면에 있어서의 지원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광고 관련된 글로벌 컨퍼런스 초청 참관이나 SBS미디어스쿨이나 이런 자체적인 일종의 마케팅 예산이 아닌가 하는 부분까지도 공적 지원 규모에 포함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행실적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을 당부하면서 제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적 역할 수행이라고 매출총액의 3%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이것이 명목만 그렇고 실질은 전체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이행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처에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윤리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보고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6월 9일에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확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시행령의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위임한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와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범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국가·지자체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및 유통방지 관련 사업을 위탁·보조 받은 기관·단체 중 방통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고 서식입니다.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을 하려는 경우 그 해당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을 별지 제1호에 규정해 넣었습니다. 이 서식 안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이나 이것을 신고하는 사유에 대해서 표기하도록 서식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차단 또는 삭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면 바로 이에 대해서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하도록 규정함을 동시에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사업자의 범위는 먼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 또는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시정 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조치의무 대상사업자와 그 서비스를 5월 말까지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치기한입니다. 방통위로부터 새롭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그 해당 조치기한을 해당 연도 말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성능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은 4가지로 조치의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상시적 신고기능이고, 두 번째는 신고된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확인해서 정보의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특징 등을 비교하여 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할 경우 이에 대해서 이용자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즉 필터링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일종의 경고 조치입니다. 이 4가지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제30조의6제2항제3호의 조치, 즉 필터링 조치를 하는 경우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방통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기술적 조치에 대한 부분에, 즉 필터링 조치에 대한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을 규정하였

습니다. 다만, 성능평가 기관 선정 및 성능평가 기준 개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성능평가 시행 시기는 시행령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보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3년간 보관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치의무사업자와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 시 과징금의 산정기준인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분에 매출액이 어느 매출액에 해당하느냐의 기준 매출액을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부과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중·감경을 할 시에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법에서 사업폐업 또는 사업정지 처분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첫 번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 규정 위반이거나 아니면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했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한 시에는 방통위가 요청할 경우 사업의 폐업이나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분 기준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별표 2]에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부분을 9개월, 6개월, 3개월 부분으로 기존에 있는 [별표 2]에 같이 포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정지나 폐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규정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별표 9] 안에 지금 보고드린 부분의 기술적 조치의무나 주식·지분 소유 제한 규정 위반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 시 매출액 대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표 9]에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기존에 2,000만원이었던 부분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 부분이 있고, 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제한 규정을 명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이나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 과태료에 대해 각각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11] 안에 부과기준을 마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7월 27일부터 동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9월 초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실시한 이후 규제심사를 거친 후 다시 위원회 의결을 조치하고, 마지막으로 12월 1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건은 일단 의견에 앞서 지금 이야기한 시행령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항 그리고 나항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고를 한꺼번에 받고 같이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같이 하면 너무 길어서 잊어버릴까 봐...

○ 허 욱 상임위원

- 항목으로 같이 보면 일정 파트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보고하고자 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내용이 많아지면 질의나 의견을 낼 사항들을 잊어버리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보고를 받을까요?

○ 표철수 부위원장

-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뒷부분 향후 계획 빼고 내용에 대해서만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다음 보고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망법은 간단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제1항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지정하는 자로 규정하는 부분은 앞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대상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과 일일평균이용자 10만명 또는 방심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지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방통위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지정하도록 시행령 규정에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정하게 되면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와 자격요건, 책임자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는 매년 6월 말까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해당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지정의무 대상사업자의 임원 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자는 방통위가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2시간 이내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입니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자와 법체계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하게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사업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책임자를 미지정하거나 투명성 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책임자 미지정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투명성 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기존에 있는 [별표 9] 과태료 부과 기준안에 해당 사항을 포함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질문들을 해 주시지요. 항목이 많아서 일단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임시적으로 차단 또는 삭제조치를 한 후에 지체없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여기에 넣었는데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한 것에 대해 바깥에서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 이것을 해야지, 임시적으로 차단 또는 삭제조치를 한다는 판단근거가 임의성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대상 정보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니면 불법편집물 아니면 아칭 이용 음란물, 즉 아칭 성착취물이 해당 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서식에 저희가 그 내용이 각 해당법에 의거해서 맞는지, 즉 대상 신고사유에 명확하게 표기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의 목적을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래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임시차단에 대한 효과를 통해 삭제 전에라도 재유포나 유포에 대한 방지효과를 주기 위해 임시차단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입니다. 그 임시차단 후 방심위에 심의 요청하면 현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심의가 1일 이내로 심의 조치됩니다. 그래서 1일 이내의 조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한 부분이 사업자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임시조치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업법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에서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국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삭제 지원 및 유통방지 관련 사업을 위탁·보조받은 기관·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대체 이런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현재 개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이나 유통방지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가 법과 근거를 확인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타 부분으로 넣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단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경기도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나 아니면 그런 피해자들을 삭제·지원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쥐서 기관을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1호나 2호에서 명시한 부분은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아니면 성폭력방지법에 의한 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각 호에 명시해서 넣은 기관·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기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판단에 적정한지를 보고 지정하기 위해 3호 부분으로 넣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중 불법촬영물등을 유통방지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작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 또는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말씀드렸듯이 저희 망법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나 기타 다른 의무를 지닌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과 이용자수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서 지정하는 부분에 플러스 해당 청소년보호책임자 같은 경우 청유물을 지정·매개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유통방지 책임을 하려면 해당 사업자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대상사업자 부분을 일일평균이용자수와 매출액

부분에 추가해서 저희가 해당 대상사업자를 지정해서 5월 말까지 고시하는 방안으로 포함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그 대상 정보가 유통되느냐에 따라 의무책임자도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규정한 부분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면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중에서 뒤에 위탁 보조사업자 중 방통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가 기타 조항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앞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이런 부분들은 이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한 것입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여가부와 사전에 협의해서 여가부에서 지정에 대해 근거법과 기관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부처 협의를 사전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성능평가 부분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방통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보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이것이 사전적 규제이지 않습니까? 미리 성능평가를 받아서 오라는 의미가 되는데, 예를 들어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충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성능평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형식적 기준으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 개발한 기술이 그것보다 결과적으로 좀 더 우수한,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필터링 시스템은 있었는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아니요, 그런 의미로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위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에서 필터링 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심위에서 디지털성범죄물로 규정받아서 시정요구를 받았던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 함께 진행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심위에서 디지털성범죄물로 받은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업자가 적어도 이 정보들은, 이 디지털성범죄물들은 재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터링 조치에 기본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니 이 부분이 필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거쳐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필터링 될 때 예를 들어 95% 이상 필터링되면 적어도 재유포되는 부분에서의 기술적 조치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았는데도 필터링이 제대로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성능평가의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이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를 통과하는 기준으로 넘어 설 수 있는 부분이면 허용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평가를...

○ 한상혁 위원장

- 자체평가에서 성능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성능평가를 통과한'이라는 의미가 어떤 형식적 절차가 규정된 것이 아니라 내용의 실질을 규정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맞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모두 성능평가를 다 거치도록 한 부분이 아니라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조치인데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또는 그 이하를 감경하는 경우 그 이하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금액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세분화할 필요가 없습니까? 3개월과 6개월 똑 같이 100분의 1에서 출발해서 감경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저희는 사업폐지·정지에 갈음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과징금 부과는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출액 대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로 시행령안에는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세분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지...

○ 한상혁 위원장

- 3개월하고 6개월은 다른데 똑같이 100분의 1에서 출발하면 가중·감경을 해도 차등화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두면 재량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터넷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부담에 관한 문제인데 많은 언론에서 제기 했던 것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새로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다고 봅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지금 법을 개정해 주실 때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존 역외규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역외규정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어서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상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의무사업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 부분의 집행력의 문제는 일단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은 공히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자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오는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사업자에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무범위 대상 사업자에 적용된다면 집행에 대한 부분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방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은 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노력한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범위 대상을 할 때는 10억원, 10만명 이렇게 되는 기준과 시정요구를 받은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선정할 때는 해외사업자도 공히 동일하게 국내외 사업자에 모두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니까 대상사업자에는 들어가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들이 할 행정처분들이 집행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답변인 것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저희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해외사업자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요 사업자들도 함께 의견수렴을 하면서 진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이런 부분들도 이 적용대상에 분명 포함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의견수렴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의견이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허 옥 상임위원

- 의견 전에 부연설명을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한상혁 위원장

-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n번방 대책회의에 참여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장님께서 방심위와 같이 디지털성범죄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포털사업자들, 즉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이견이 있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를 돕는 여가부 산하의 지원단체에서는 조속한 삭제 그리고 조속한 임시조치들을 원했었습니다. 방심위를 거쳐 하루 만에 긴급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다는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단체들, 그리고 지자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지정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의견개진을 막는, 일종의 블로킹하는 임시조치가 아니고 불법촬영물은 일단 광범위한 신속한 유포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로 추가한 것입니다. 또 규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국내 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 가운데 이견이 팽팽해서 나름 고민한 끝에 이런 정도 안으로 만들어진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금 시민단체들 입장에서선 전 사업자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곳에서 퍼져도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이것이 퍼져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르는 검증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지하지만 적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서 더 확대되는 측면들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모든 사업자들을 행정업무로 다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기에는 규제의 오버헤드가 워낙 커져서 이런 정도 선으로 안이 마련된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성능평가에 관련된 사항도 핵심은 그동안 불법촬영물에 관련된 핵심 데이터, 그 데이터베이스를 방심위에서 계속적으로 모아서 쌓아나갑니다. 그런데 각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보고 만들라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마련하고 있는 몇몇 가지 유통되면 안 되는 사안들, '그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해서 가져다 써라, 그러면 비용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그것이 방통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적어도 불법촬영물 DB에 한정되는 부분은 유통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쪽이 있다면, 네이버나 몇몇 알고리즘이 뛰어난 검색엔진을 가진 쪽에서는 충분히 다 통과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점 중 하나는 예를 들면 텔레그램이나 카톡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밀하게 공유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 사업자들이 조금 더 모니터링 한 후 삭제 조치를 하는 방식이어야지 그러한 부분까지 자기들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 통과한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법촬영물을 일정 정도 유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마치 이것이 시행령 규정안이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받아들여지면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상사업자도 지금 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깐 전수조사해 달라는데 이렇게 제한하면 10억 이하 이야기하는 대상사업자 범위가 이전 법령 안에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법령 안에서요?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규정에서 대상사업자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거나 망법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액과 이용자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유물로 매개 지정한 경우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항목은 동일하더라도 기준이 10만명을 5만명으로 낮춘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대로 한 것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저희가 여러 모로 검토를 한 부분인데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차용해 왔다기보다는 10억원과 10만명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으로 망법상에서 기준 적용을 할 때 큰 규모와 적은 규모를 막론하고 그 정도의 선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5만으로 낮추는 것이나 5,000명 이렇게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 기술적 조치를 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점을 찾은 부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방통위가 일을 하고 비판을 대부분 양쪽에서 다 받는데 한쪽에서는 느슨하다고 하고 한쪽은 너무 엄격하다고 하면 우리가 정책목표에 따라서 어느 지점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접수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불법촬영물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고 국회에 입법된 데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급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도 특히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법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따른 의무사업자 범위 그리고 조치 내용, 성능평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내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규정, 또 투명성 보고서를 내도록 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접수하고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대상자 범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정도의 절충 내지 타협안을 만든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디지털성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아서 매출액 10억원 혹은 5억원, 또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혹은 5만명 이런 식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대상 범위가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이 힘들다거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왜 10억이냐?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부가통신사업자의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저희가 망법상 기준에 적용하는 것처럼 일일평균 이용자수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뽑는 여러 가지 것을 평균값으로 뽑는다거나 이런 조사방법의 보완점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10억원과 10만명에 대한 부분도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대상사업자에게 부과하기에 적절한 범위라고 판단한 부분은 연구반을 통해서도 의견이 있었던 부분인데, 입법예고를 통해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사업자를 지정하기 전에 저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진행함과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범위를 정하고 고시로 재위임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이 100분의 1에서 그것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표> 안에 저희 것을 100분의 1로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로 넣는다는 것이고, 기존 <표>에서 사업정지에 따라서 별도로 매출이...

○ 한상혁 위원장

- 몇 개월이면 몇 분의 몇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00분의 1로 되어 있어서...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아까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은 저희 것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로 명시해서 같이 <표>에 넣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안에는 몇 개월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부과가 되어 있는 <표> 안에 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호 사무처장

- 각각 다르게 있는 부분에 3개월, 6개월 그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그런데 오늘 안건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100분의 1은 몇 개월짜리입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 최성호 사무처장

- 기준 과징금을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이 사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40, 6개월은 100분의 60, 그래서 개월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에는 되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맞나 싶어서 여쭙봤던 것입니다.

○ 최성호 사무처장

- 1년 이내에서 3, 6, 9, 12개월로 나누어서...

○ 한상혁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렇게 접수하시고, 다들 잘 하시겠지만 n번방 관련한 입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은 이것이 쓸모 있는 법이나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한쪽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 봐야 이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 우리가 관할한 업무 중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시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입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가졌던 입법취지, 그리고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은 원안대로 접수하고, 이후 수정 사항은 입법예고 과정이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들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 가>, <보고안건 나>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6분 폐회 】